

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자격정지 공시송달

「의료법」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‘행정처분서’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여야 하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20일

보건복지부장관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제 목

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

3. 공고 대상자 및 내역

행정처분서				
처분제목	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			
당사자	성명(생년월일)	박미진 (870709)	면허번호	간호사 제29****호
처분내용	처분 종류	자격정지 15일		
	처분 기간	2025.2.1.~2025.2.15.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- 간호사 박미진은 광주시 북구 윤***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김**의 입원기간인 2019.8.12.부터 8.26.까지 입원 첫날만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기간에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음에도, 간호기록지에 'sleeping now' 등으로 기재하는 등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2020.3.30.까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.			
사법처리결과	○ 기소유예 (광주지방검찰청, 2022.12.29., 2022형제22184)			
처분관련 법적근거	○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○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[별표] 행정처분기준(보건복지부령 제604호, 2018.12.20.) 1. 공통기준 라.1) 및 2. 개별기준 가.15)			
주의사항	○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(국내·외 의료봉사 포함) 수행 불가			

※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※

○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○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

가. 행정심판 청구

-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(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 할 수 없음에 유의)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(☎ 110, www.simpan.go.kr 온라인, 우편 접수 가능)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행정소송 제기

- 행정소송법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(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)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